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호 6555 제출연월일 : 2024. 12. 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,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, 범 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 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・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・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「범죄피해 자보호기금법」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」의 개정)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심의회의 위원장"을 "법무부장관"으로 한다.

법무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.
- 제2조(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의 개정)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"를 "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"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"(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)"를 "(범죄피해자보호·지원 협의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(이하 "보 호위원회"라 한다)"를 "범죄피해자보호·지원협의회(이하 "보호·지원협의회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호위원회"를 "보호·지원협의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호·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된다.
- ④ 보호·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·지원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24조제1항 중 "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(이하 "본부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"를 "둔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(이하 "본부심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무부장관은 본부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제27조제1항 중 "본부심의회에"를 "법무부장관에게 본부심의회의"로

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구심의회는"을 "지구심의회는 그 재심신청을 받은 날부터"로, "본부심의회에"를 "법무부장관에게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"을 "재심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구심의회로부터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을 송부받은 날(제24조제5항에 따라 본부심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부심의회가 다시 구성된 날을 말한다)부터 4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신청 및 구조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조(「법교육지원법」의 개정) 법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"를 "법문화진흥센터로"로 한다.

제4조(「외국법자문사법」의 개정)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(이하"변협징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 법무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 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(이하 "법무부징계 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39조의 제목 "(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)"을 "(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전단 중 "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(이하 "변협징계위원회"라고 한다)"를 "변협징계위원회"로 한다.

제40조의 제목 "(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)"을 "(법무부징계위원회의 구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로 하며, 예비위원 7명을 둘 수 있다.

제4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8항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4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중 "제8항"을 "제9항"으로 한다.

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

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 제4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만료된 것으로 본다.
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7조(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 | 제7조(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 의회)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의회) ①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 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(이하 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구성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・운영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| 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무부장관-----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회의 구성 <신 설>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. ③ (생 략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기본계획 수립) ① 법무부	제12조(기본계획 수립) ①
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	<u>범죄피해</u>
<u>자 보호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쳐	자보호·지원협의회
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	
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	
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	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) ①	제15조(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
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	의회) ①
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	
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	
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(이	<u>범죄피해자보호·지원협의</u>
하 "보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둔	회(이하 "보호·지원협의회"라
다.	<u>한다)</u>
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	② <u>보호·지원협의회</u>
사항을 심의한다.	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	③ 보호ㆍ지원협의회의 위원장
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	은 법무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
<u>성한다.</u>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국가
	기관 소속 공무원이 된다.

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<</u>신 설>

제24조(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)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 의 •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 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(이 하 "지구심의회"라 한다)를 두 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(이하 "본부심의회"라 한 다)를 둔다.

- ② (생략)
-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결정한다.
- 1. 2. (생략)
- ④ (생략)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| ④ 보호·지원협의회는 제2항 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한 자문 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 된 자문단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보호 · 지원협의 회 및 자문단의 구성・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) ① 다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 해구조본부심의회(이하 "본부 심의회"라 한다)를 구성・운영 할 수 있다.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⑤ • ⑥ (생략)

제27조(재심신청) ① 지구심의회 저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 (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본부심의회는 제1항의 <u>신청</u> 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⑤ 법무부장관은 본부심의회의
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
하는 경우에는 본부심의회를 해
산할 수 있다.
<u>⑥</u> ⋅ <u>⑦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
같음)
세27조(재심신청) ①
<u>법</u>
무부장관에게 본부심의회의
②
지구심의회는 그 재심신청을 받
은 날부터 법
무부장관에게
③ <u>재심</u>
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법
무부장관이 지구심의회로부터
구조금 지급신청 기록을 송부받
은 날(제24조제5항에 따라 본부
심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같은
조 제3항에 따라 본부심의회가

다시 구성된 날을 말한다)부터

	4주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
	정한 사항 외에 재심신청 및 구
	조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한다.

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4조(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)	<삭	제>			
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					
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					
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					
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					
위원회를 둔다.					
② 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					
의 사항을 심의한다.					
1. 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					
2.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					
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					
<u>한 사항</u>					
3. 법교육 업무의 협력·조정에					
관한 사항					
4. 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					
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					
<u>하</u>					
③ 법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					
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					
소속 공무원 및 법교육에 관한					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					
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25					
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・운영					

된다.

- ④ 법무부장관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중앙행정기관 소 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 여야 한다.
- ⑤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무부장관이 법교육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임명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교육위원회의 구성・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5조(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) 제5조(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)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 관·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①	
	법문화진
흥센터로	

② (현행과 같음)

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	제38조(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
의 설치) ① (생 략)	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	②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
<u>각각</u>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	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
를 둔다.	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
	에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(이
	하 "변협징계위원회"라 한다)를
	<u>둔다.</u>
<u> <신 설></u>	③ 법무부장관은 제37조제1항
	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
	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
	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
	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
	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(이하
	"법무부징계위원회"라 한다)를
	<u>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
제39조(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	제39조(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
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대	변협징계위원회
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	
계위원회(이하 "변협징계위원	
회"라고 한다)는 다음 각 호의	
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법	
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	

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 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~ ⑦ (생 략)
- 제40조(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 제40조(법무부징계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의 구성) ① 법무부 외국 법자문사징계위원회(이하"법무ㅣ 부징계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 장 1명과 부위원장 1명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ㅣ 로 구성하며, 예비위원 7명을 둔 다.
 - ②·③ (생 략)
 - 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 <단서 신 설>

⑤ ~ ⑦ (생 략) <신<u>설></u>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①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 명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 닌 위원 7명으로 하며, 예비위 원 7명을 둘 수 있다.
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8항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 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 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
-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으로 한다.

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 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징 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8	(생	략)
(\mathbf{O})	\ O	-

- ⑨ 제1항부터 <u>제8항</u>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1조(징계위원회의 권한) ① 변 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 계 사건을 심의한다.
 -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 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 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 사건을 심의한다.

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<u>⑩</u> <u>제9항</u>
 .
<u><</u> 삭 제>